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재산관리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의2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중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의2 중 “영 제100조의3제2호”를 “영 제100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 제1호사목·제2호사목 및 제3호사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제28조제1항의 단서 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중 “16,103명”을 “16,121명”으로 하고, 안 동조 제4호중 “214명”을 “232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5,984명”을 “16,12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339명”을 “10,450명”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206명”을 “232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01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중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단)”을 “(민주공원조성 추진인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10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중 “(건설안전본부 청계천복원공사국 정원)”을 “(청계천복원공사 추진인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1명(지방혁신분권업무 추진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9
------	-----

2004. 9.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4년 9월 6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경영기획실장 이철수)

가.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등으로 사무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사무가 신설되고,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분리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가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함.

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관리대상시설과 오염물질항목이 확대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등 필요조치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확인 등의 환경부장관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가로수·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상의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리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기하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 남 중)

□ 총괄부분

- 본 조례는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여러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청장 등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신설된 실내공기질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의 권한이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내용을 도시공